발행·편집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 440-2221, FAX 440-2583)

화 천 군 군 보

www.ihc.go.kr

제295호 2021년 5월 31일

선람	기관의 장

공 고 문

1.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 13
2.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3.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4.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5. 화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6.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7.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8.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59
9.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67
10.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11.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77
12.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90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64호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화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천군에 소재지를 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6. “성인문해교육기관”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시설 및 그에 준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 운영시설 포함)한 교육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3. 성인문해교육 사업 계획 및 운영
4.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 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운영
5. 학습정보, 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6. 평생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 등을 위한 사업
8. 국내·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단체·학습동아리에 보조금

지급 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등

제6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유관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과장,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화천교육지원청 소속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3.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시설간 업무조정, 협력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등

제13조(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3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읍·면 주민자치센터
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3. 그 밖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지역 주민에 대한 학습상담 및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

3. 읍・면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읍・면 평생교육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읍・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평생교육사 배치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전담인력과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수강료의 환불은 「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제16조(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2. 그 밖의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수당과 자격 기준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7조(강사의 위촉 해제)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3. 평생교육기관 등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수강 등록자가 모집 정원의 10분의 5 미만이 되어 폐강된 경우

제4장 성인문해교육

제18조(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화천군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성인문해교육의 진흥)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성인문해교육의 경비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시행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22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천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과 읍·면 평생학습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실비를 지급·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또는 실비의 지급·지원 기준은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포상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은 수강자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5조(수강료 징수 등) 관련

수강료 및 면제기준

○ 수강료 기준

기 준	월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10,000원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부담
특별강좌	별도책정	

○ 수강료 면제기준

구 분	내 용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65호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서비스”를 “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과 관련된 노인복지 행사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경로식당 운영) ① 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은 주 5일 중식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횟수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로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이용료 및 사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 사

용신청서”를 “시설사용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받은 즉시 제7조제1항”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의 이용대상자가 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할 경우
2.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종전의 제11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센터 사용료 등 (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이용료	수강료	1개월	10,000	
	식당	1식	2,000	
	건강증진실		무료	
	체력단련실		무료	
사용료	다목적실	2시간	20,000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2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 가산

[별표 2]

복지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감면기준
이용료	수강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무료
	식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원봉사자	무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료의 50%
사용료	다목적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무료
		법인 또는 단체가 노인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사용료의 50%

[별표 3]

복지센터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1. 공통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반환금액
사용료 이용료	1. 복지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 단, 수강료의 경우 개강 후 해당사유로 폐강하였을 시 폐강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함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2. 요금구분 및 여건별 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반환금액
	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가. 수강료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육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납부한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육시간의 1/3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납부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금액(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사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나. 식당 이용료			없음
사용료				없음
< 비고 > 1. 수강료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함 2. 교재비 및 재료비는 반환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해당 시 기재)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신청 내역

※ □칸에 해당구분을 √체크 해주세요

□ 시설 사용			□ 프로그램 참여		
시설명 (기타시설)		(조명, 방송시설, 냉·난방, 기타)	프로그램명		
사용일자 (또는 기간)			해당월 (또는 기간)		
사용목적 (행사명)			기타 특이사항		
사용인원					
사용료	금 액	(천원)	수강료	금 액	(천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기간	까지
	감면여부	무료, 50%, 전액		감면여부	무료, 50%, 전액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시설사용 신청 접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 신청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소재지), 성명(단체명), 연락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강신청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취소와 사용료 등 반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시설사용 허가서 (제9조제3항 관련)

<table>
<tr><td colspan="2">허 가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사
용
자</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단 체 명</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용
시설</td><td>기 본 시 설</td><td colspan="4"></td></tr>
<tr><td>부 대 시 설</td><td colspan="4">□ 조 명 □ 방송시설 □ 냉·난방 □ 기타</td></tr>
<tr><td colspan="2">사 용 기 간</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 용 목 적</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행 사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개요</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 용 료</td><td>금 원</td><td>납부기한</td><td colspan="2">. . . 까지</td></tr>
<tr><td colspan="2">허 가 조 건</td><td colspan="4">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복지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직인

(뒷면)

사용승인 조건

1. 사용자는 사용료(이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을 취소할 때에는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사용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사용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특정 종교의 홍보나 정치목적, 상품설명회 등 판매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영상·음향장치 등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분실사고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시설사용 중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장비 파손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8. 시설 내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다과류 가능), 발생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시설 청결 유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그 밖에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대장 (제9조제3항 관련)

허가 번호	신 청 연월일	허 가 연월일	사용자 인적사항			허 가 내 용			비고
			성 명 (단체명)	주 소	연락처	시설명	사용기간	사용목적	

[서식 4] "신설" 서식

시설사용 취소신청서(제10조제3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소재지)	화천군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해당 시 기재)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취소신청 내역

※ □칸에 해당구분을 체크 해주세요

□ 시설 사용		□ 프로그램 참여	
시설명		프로그램명 (강사명)	(강사 :)
사용예정일자 (또는 기간)		해당월 (해당기간)	
취소사유		취소사유	

반환신청 내역

반환금액	금 원(₩)		
반환계좌	- 계좌번호 : - 거래은행 :	예금주명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버복지센터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시설사용 취소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사용 신청취소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소재지), 성명(단체명), 연락처,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은행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강신청 취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취소와 사용료 등 반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노인의 소득보장・재가복지 및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 ---------- ------- 편의 -----
<신 설>	4.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과 관련된 노인복지 행사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운영시간) ①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신 설>	제6조(경로식당 운영) ① 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은 주 5일 중식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횟수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자)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목적실 등을 복지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인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자) ① ---------- ----------. <단서 삭제>
<신 설>	② 경로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사용료 등) 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 ----------- 사용료 및 이용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③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 다음 ---------- ---------- ---------- 경우에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1. 제7조제1항의 이용대상자가 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할 경우
2.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2.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시설사용 신청서 ----------.
③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대장------.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10조제1항----------.
제9조·제10조 (생 략)	제11조·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않은 ----------.

<신 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66호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중 “「회계관계직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① ---------- 조례에서 ----------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67호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3장제1절(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화천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만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사업소분----------.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

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 --------- 영 제85조의4----------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규칙 제1176호

화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화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3조”를 “법 제84조”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6조제1항 관련)

연도 월분 (화천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재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 당	과 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제7조 관련)

년도 월분 (화천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재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 법 제84조-------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분)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 ---------- ---------- (사업소분) ---------- --- 법 제83조제6항---------- ----------.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략)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 ---------- ----------.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세기본법」제49조---------- 같은 법 제50조---------- ---------- ---------- ----------

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서식 정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68호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 ---------- ---------- ---------- 사업소분--------- ---------- ----------.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69호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9조 제4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굴절이상”을 “굴절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아니한 것으로 본다”를 “않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법 제177조의 2제1항”을 “법 제17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8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법 제29조제4항---------- ---------- ---------- ---------- ---------- ---------- ---------- ---------- ---------- ---------- ---------- ---------- ---------- ---------- ---------- ---------- ---------- ---------- ----------

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감면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 ---------- ---------- ---------- 2022년 12월 31일----------. --- ---------- ---------- ---------- ---------- ----------.
1. 좋은 눈(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1. ---------- ---------- 굴절 이상----------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	④ ----------

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8조제6항 ---------- ---------- 않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	<삭 제>

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6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 ---- 법 제78조의3제12항----------.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

한다.	--.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중 “3년”을 “7년” 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 ---------- ----------.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 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 2제1항 본문(단서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 ---------- ---------- 법 제177조의2제1항---------. ---------- ---------- ---------- 않는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 따른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 ---------- 않은 - ----------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70호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에서 지정·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에 따라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 제 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등 기반시설의 설치
3.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내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7.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8. 제5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9. 그 밖에 입주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 지원보조금: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임의 50퍼센트 범위 내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 세부 지원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면책)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화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규칙 제1177호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 지원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입주기업체”란 원천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화천군수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인증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별표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3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류보조금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회 사 명</td><td colspan="3"></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 성명
(성별)</td><td colspan="3">(남,여)</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td><td colspan="3" rowspan="2"></td><td>전 화</td><td colspan="2"></td></tr>
<tr><td>FAX</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업장소재지</td><td colspan="3"></td><td>업종
(분류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장현황</td><td>공장면적</td><td colspan="2">㎡</td><td>주생산품</td><td colspan="2"></td></tr>
<tr><td>고용인원</td><td colspan="2">명</td><td>내국인</td><td>남 명, 여 명</td><td></td></tr>
<tr><td colspan="2">보조금 신청내역</td><td colspan="2">외국인</td><td>남 명, 여 명</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td><td>해당연도</td><td>소요된 물류비용</td><td>보조금 신청액</td><td colspan="2">지원비율</td></tr>
<tr><td>년</td><td>원</td><td>원</td><td colspan="2">%</td></tr>
</table>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필요시 구체적인 지출증명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발행한 운임 증명서 1부.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 입금내역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증 지원금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회 사 명</td><td colspan="3"></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대표자 성명
(성별)</td><td colspan="3">(남,여)</td><td>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td><td colspan="3" rowspan="2"></td><td>전 화</td><td colspan="3"></td></tr>
<tr><td>FAX</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업장소재지</td><td colspan="3"></td><td>업종
(분류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장현황</td><td>공장면적</td><td colspan="2">㎡</td><td>주생산품</td><td colspan="3"></td></tr>
<tr><td>고용인원</td><td colspan="2">명</td><td>내국인</td><td>남 명, 여 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지원금 신청내역</td><td colspan="2">해당연도</td><td>기술인증의 명칭</td><td>소요된 금액</td><td>지원금 신청액</td><td colspan="2">지원비율</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원</td><td>원</td><td colspan="2">%</td></tr>
</table>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인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2. 기술인증 증명서 사본 1부.
3. 기술개발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4. 기술인증 기관에서 발행한 제반 수수료 영수증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성별)	(남,여)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			전 화	
				FAX	
사업장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공장현황	공장면적	㎡		주생산품	
	고용인원	명		내국인	남 명, 여 명
				외국인	남 명, 여 명
지원금 신청내역	해당연도	소요된 운영비용		지원금 신청액	지원비율
	년	원		원	%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료 전년도 1년간 납부자료 1부
2.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표 1]

물류보조금 지원기준

(제3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간 (년)
입주기업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5명 미만인 기업	물류비용×50%	5	계속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기업	물류비용×50%	10	계속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물류비용×50%	15	계속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	물류비용×50%	17	계속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물류비용×50%	20	계속

주1) 물류비용은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납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위탁 운송하는 화물 운임을 말한다.

주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별표 2]

기술인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 관련)

지원 대상	인증 구분	지원 대상 인증의 종류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
입주기업	기술품질인증	NEP, NET, GS, 특허, 실용신안, GD, KS, K마크, 성능인증제품, 녹색기술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의 인증물품, Q마크	생산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 50%	10
	녹색물품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주1)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 및 실험비와 제반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신규와 갱신을 포함한다.

주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별표 3]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지원기준

(제5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	지원기간 (년)
입주기업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5명 미만인 기업	운임×50%	5	계속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인 기업	운임×50%	10	계속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운임×50%	12	계속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	운임×50%	15	계속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운임×50%	20	계속

주1) 운영비용은 전세버스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말하며, 직원 출·퇴근 용도에 한한다.
주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하거나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 제외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71호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지원방법 및 대상) ①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은 주민 공동사업의 형태 또는 가구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내

에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제1호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를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하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기금의 지원방법 및 대상) ①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은 주민 공동사업의 형태 또는 가구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내에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1. ----------100분의20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심	제11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심

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 및 제263회 화천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72호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편의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시설의 장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성·영유아 등 군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 불가항력적 사유발생 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복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비 지원 등)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 2의2 제2호 다목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출산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천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화천군민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화천군민에 대한 감면 비율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 이용료 보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화천군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천군 물품관리조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4.28.)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규칙 제1178호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신청)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공공산후조리원”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

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대상 및 범위
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5. 위탁대상이 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장비 목록
6. 수탁자의 의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 및 책임) ① 공공산후조리원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며, 이 경우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공공산후조리원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④ 그 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에 별표3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예산편성 계획
4. 전년도 사업실적
5. 공공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 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운영사항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13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② 감면대상자가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용료의 감면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제14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제15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의무) ①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수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매일 또는 수시로 산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매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기록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의무) ① 산모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하며,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자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신생아에서 발병(發病) 또는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병원검진 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의사결정은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인 신생아의 산모가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기본요금	900,000	1,800,000	2,700,000	3,600,000	

※ 비 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금 128,570원/ 1일 으로 한다.
2. 다태아 등의 출산으로 늘어나는 영유아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3.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에 한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1일 기준단가 금액을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감면 대상	감면비율	제출 서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0%	·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0%	·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00%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100%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100%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0%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100%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의 산모	100%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0%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 현재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100%	· 주민등록등본
출산일 현재 화천군에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50%	· 주민등록등본
화천군민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그지역의 화천군민에 대한 감면비율	· 주민등록등본

※ 비고 : 감면 대상별 제출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별표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

<table>
<tr><th>시설</th><th>유형</th><th>반환사유</th><th>기 준</th><th>반환금액</th></tr>
<tr><td rowspan="5">산후조리원</td><td rowspan="4">입소전</td><td>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td><td></td><td>예약금 전액 환급</td></tr>
<tr><td rowspan="3">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td><td>이용예약일
31일 이전</td><td>예약금 전액 환급</td></tr>
<tr><td>이용예약일
20일 이전</td><td>예약금의 50%환급</td></tr>
<tr><td>이용예정일
10일 이전</td><td>예약금 전액 미환급</td></tr>
<tr><td rowspan="2">입소후</td><td>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td><td></td><td rowspan="2">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td></tr>
<tr><td>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td><td></td></tr>
</table>

[별지 제1호 서식]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제2조관련)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탁기간		. . . 부터 . . .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제3조관련)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탁기간		. . . 부터 . . .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보고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서식1]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

감면대상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출생아	성명		성별	
	분만산부인과			
	소 재 지		출생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감면대상종류	(화천 공공산후조리원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 대상자)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화천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서식2]

예 약 확 인 서

산모	성명			직업	
	주민번호			연락처	
보호자	성명			직업	
	주민번호			연락처	
주 소				분만력	
분만예정일		분만병원		분만형태	N/D C/sec
조리기간		예약금	(카드, 현금)	잔 금	

상기 본인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실하기 위하여 본 조리원의 규정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며, 취소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환불 조치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